

데이터베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장치마련의 필요성

The Need of Law System for Database Industry Development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al.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초고속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지난 5월 29일 서울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의 구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정보통신기반」(GII)과 일본이 제창한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이 주로 통신망구축을 의미하는 하드웨어(H/W) 위주라면,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안한 「아·태정보통신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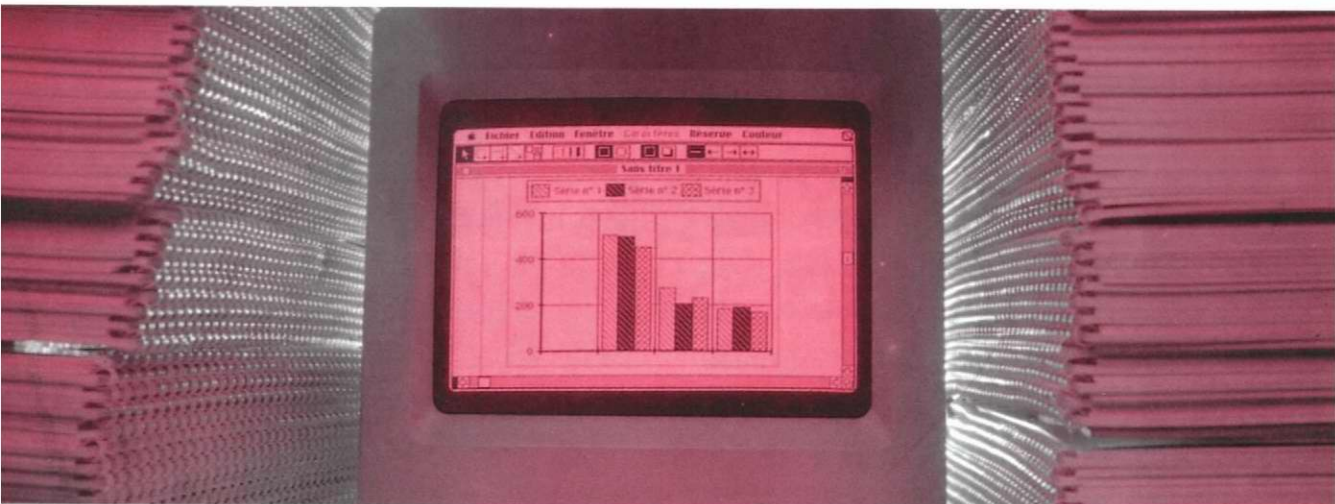
“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서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범국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과제로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APII)의 특성은 통신망은 물론 이용을 위한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S/W) 측면이 강조되었다는데에 그 의미가 크고 이 점에 관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아·태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망이 용을 위한 표준화는 그 핵심의 과제가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표준화 등 데이터베이스 S/W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사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정책입안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도 「초고속통신망」이라는 망자체에



관해서만 치중하고 있다. 즉 광섬유 등 첨단통신회선의 구축 등 하드웨어(H/W) 측면만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다. 우선 급한것은 「데이터베이스사업」 등 데이터, 소프트웨어산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도로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고속도로가 완공된 다음에야 자동차공장 건립계획을 세우고 기술도입하여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경비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는가.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된다.

물론 자동차는 우선 급한대로 수입차도 가능하다. 아무 지장이없이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사업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우선 대부분의 이용자인 우리 국민에게 알맞게 표

준화나 언어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정서에 맞지도 않는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산업기재 등은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여도, 데이터베이스 산업기재(예컨대 원시 데이터, 소프트웨어)는 도저히 수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한다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프랑스 지스까르 대통령의 유명한 선언을 들 수 있다. 1978년 프랑스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미국의 정보유산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지스까르 대통령은 「데이터뱅크의 창설은 국가의 지상과제이다. 데이터뱅크가 예측되면 문화의 예측을 의미하며, 문화의 예측은 자주독립국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프랑스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오늘날 정보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통신망등 하드웨어의 시설구축은 자금만 확보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측면은 설사 자금이 확보된다 하여도 단기간에 구축이 불가능하고, 그 효용성이 없다.

최소한도 5년내지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축적되어야 하고, 이용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마치 자동차는 돈만 있으면 금방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으나 운전기술은 최소한 5년내지 10년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치와 똑같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사업의 우선적 과제는 그 방향을 크게 전환시켜 데이터베이스사업의 지원·육성에 두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실태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소자본을 투자해서 회수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민간기업, 개인 등 민간차원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활성화될 것이다. 즉 자본주의 경쟁원리에 따라 투자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산업에 투자하면 현상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보산업계의 실상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개인도 앞으로 정보화사회에서 유망한 산업이고 보람있는 사업으로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나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겨우 오락성 또는 레저용 데이터베이스가 어느정도 타산성을 맞추고 있고, 경제·산업용 데이터베이

스 또는 학술용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베이스산업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바람직한 데이터베이스는 그 이용율이 저조하여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발간한 한국데이터베이스목록(1995)을 근거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분야 408건, 경제산업분야 454건, 학술분야 34건 모두 907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업체별 현황에서 가장 활발히 참여해야 할 데이터베이스전문업체가 겨우 25개 업체로서 겨우 6.3%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기업(49.4%), 공공기관(12.4%), 언론기관(9.8%)등의 순서이다.

우선 놀라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전문업체가 전국에 25개 업체에 머물고 있고 6.3% 정도만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의 실상이

어느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사업을 시급히 육성하지 않고서는 앞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고속통신망사업, 아·태정보통신망사업(APII)도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민간전담사업자의 창업과 참여가 저조(전국6.3%)한 이유는 두말할 필요없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 투자되는 자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산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서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진흥기금 설치의 필요성

범국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근거로서 별도의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금설치근거법률을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민투자기금법, 공업 발전법 등 모두 114개 법률이 있다. (기금관리 기본법 별표 참조). 이 중에서 경제·산업·기술관련분야가 52건으로 약 45%이며 그 밖에 교육·문화·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분야의 산업이나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정보화분야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고속통신망구축의 핵심과제가 데이터베이스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에 특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기금의 설치의 필요성은 언론등의 보도에 의하여 더욱 실감하게 한다.

한국통신에서 데이터베이스산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선정하고,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말썽을 빚은 일이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없었

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관련업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와같은 제도가 법제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된다면 위와같은 사건은 발생할 수 없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120여개의 기금이 관련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통제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말썽은 거의없다.

데이터베이스전문업체등 창업지원제도

또한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통신등 정부투자기관에서 재투자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될수 없다.

더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국을 통틀어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가 25개 수준(현재 좀 늘었을 것이다) 밖에 안되고 그나마 대부분이 영세한 형편임을 감안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창업을 촉진시켜 전문업체를 숫적으로 늘리고 설립자 등 창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5. 12. 법 3831호)을 제정하여 그 설립과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도 역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법 6조, 7조).

「공업발전법」에서 공업발전기금에 의하여 첨단전산기기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산업기술정보원법」에서 산업기술관련데이터베이스를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전산방법 등 정보화 관련 어떤 법률에서도 데이터베이스산업 창업과 발전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과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것처럼 앞으로 정보화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산업이야 말로 중소기업 등 제조업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며, 당연히 제조업과 같은 수준에서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참고로 대표적인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예시하고 그 기금의 구성과 운영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의 기금조성에 관한 입법례에서와 같이, 기금의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이외의 자의(自意)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한정성·경직성 등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개인·단체의 기부금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해외여행자의 여권발급때 일정액(15,000원 또는 20,000원)을 적립하여 기여금으로 받아 조성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는 극장·박물관·미술관 등 입장료 또는 관람료에서 일정액으로 모금하여 실제로는 관람자 등이 기금을 납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혜택을 받는 수익자 부담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데이터베이스진흥기금」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통신회선 사용료 또는 전화료에서 일정비율의 기금을 적립하여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 데이터베이스진흥법 (가칭)의 제정필요

앞에서도 밝힌바 있거니와 현재, 기금설치를 위한 근거법률

이 무려 114개 법률이 있고, 간접적으로 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지원 제도까지 포함시킨다면 적어도 150여개의 기금 등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지조, 일반민간 단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출자(기부금 등)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기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화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산업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면, 우선적인 지원대책으로 「데이터베이스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기금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출연 기타 정부투자기관

또는 사업자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산업 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기구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진흥원」(가칭)의 설치도 요구된다.

「데이터베이스진흥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고자 한다. **DTIC**

